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7월 7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2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내 제42조의1(특별휴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1(특별휴가) 대표이사는 재해·재난 발생 또는 주요시책·현안사업·국가 중요사업 등 추진을 위해 화성시에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할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휴가의 결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7월 7일 부터 시행한다.